

영업 휴업 · 재개업 · 폐업 신고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시	
신고인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전화번호			
영업장	업소명			영업의 종류			
	소재지						
	허가·신고번호			전화번호			
신고내용	신고유형	[] 휴업		[] 재개업		[] 폐업	
	폐업(재개업)일	년 월 일					
	휴업기간	년 월		일부터		년 월 일까지	
	사 유						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- 유의사항
1. 영업별 휴업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.

가. 도축업, 집유업: 휴업을 하려는 경우

나. 도축업, 집유업 이외의 영업: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

2.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
3.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[예: 도축업(소)],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·유가공업·알가공업 중 해당되는营业을 적으며[예: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],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·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营业을 적습니다[예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

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